

**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**  
(제5조 관련)

건축물	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	
1. 공장 외 건축물	가. 도시지역	1) 전용주거지역: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2) 일반주거지역·전용공업지역·일반공업지역·준공업지역: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 3) 준주거지역·중심상업지역·일반상업지역·근린상업지역·유통상업지역: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 4) 보전녹지지역·생산녹지지역·자연녹지지역: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5)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: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
	나. 도시지역 외의 지역	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
2. 공장용 건축물	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	